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34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7.

발 의 자 : 김종민·문진석·최혁진
전종덕·박수현·어기구
박희승·천하람·권칠승
위성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문제로 인해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이 실효적이지 않은 상황임. 특히, 배달플랫폼기업이 수수료, 배달비, 약관개정 등 상생협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, 상호 신뢰 상실 및 불공정 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.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기적인 조사와 공표, 자료제출 의무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적인 정책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대·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 정기조사 및 특별조사, 조사결과 공표를 법제화하고, 실태조사의 대상 및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대·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

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4조).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필요하면”을 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”으로, “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”를 “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필요하면 대기업과”를 “대기업과”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다만, 필요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이행에 관한 사항
2. 대·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계약 및 거래 등 행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생협력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이 경우 해당 기업은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)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<u>필요하면</u>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<u>실태조사를</u> 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제14조(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) ①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</u> <u>사항에 대하여 매년</u> ----- ----- <u>정기 실태</u> <u>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의 내</u> <u>용과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</u> <u>다만, 필요시 특별 실태조사를</u> <u>실시할 수 있다.</u>
<신 설>	1.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이행 에 관한 사항
<신 설>	2. 대·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계약 및 거래 등 행 위에 관한 사항
<신 설>	3.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 이 상생협력의 실태를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
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 하여 <u>필요하면 대기업과</u> 중소 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 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<후	② ----- ----- ---- <u>대기업과</u> ----- ----- ----- <u>. 이 경우 해당 기</u>

<u>단 신설></u>	<u>업은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</u> <u>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</u> <u>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
-----------------	---